

# 공간환경학부 학생회 회칙

## 제 1 장 총 칙

- 제 1 조 (명칭) 본회는 상명대학교 공간환경학부 학생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라고 칭한다.
- 제 2 조 (목적) 본회는 자치적이고 민주적인 학생활동을 통하여 학문탐구와 건전한 대학문화를 창달하며,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학과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.
- 제 3 조 (설치) 본회는 상명대학교 공간환경학부 안에 둔다.
- 제 4 조 (회원의 자격) 본회의 회원은 상명대학교 공간환경학부 모든 재학생으로 한다. 단, 휴학중에 있는 학생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- 제 5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 ①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.  
②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한다.  
③본회의 회원은 사업계획, 회비와 재정, 그 밖의 본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알권리를 갖는다.
- 제 6 조 (지도) 본회는 학생자치활동에 관련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.
- 제 7 조 (기구)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고 학생자치활동을 민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, 집행부, 학과운영위원회의 기구를 둔다.

## 제 2 장 학생총회

- 제 8 조 (구성) 학생총회는 본회의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.
- 제 9 조 (의장) ①학생총회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. 단, 학생회장 유고시에는 부학생회장, 집행부장의 순서로 의장의 권한을 대행한다.  
②학생회 정·부회장에 대한 탄핵 결정시에는 4학년 대표가 학생총회 의장이 된다.
- 제 10 조 (권한) ①학생총회는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고 받는다.  
②학생총회는 회원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및 결정한다.
- 제 11 조 (소집) 학생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  
1. 정기총회는 매 학기초에 학생회장이 소집하되 회의 개최 6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 
2. 임시총회는 학과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나, 본회 회원 1/10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제 12 조 (의결) 학생총회는 회원 1/3의 출석과 출석회원 2/3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학생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 회원은 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.

## 제 3 장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

- 제 13 조 (회장 및 부회장) ①학생회장 및 부회장은 당해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.  
② 학생회장 및 부회장은 당해 본회를 대표한다.
- 제 14 조 (지위) ①학생회장은 본회의 학생총회 의장 및 집행부의 장이 된다.  
②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 궐위시에는 그 직을 계승한다. 단, 회장의 궐위 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기간동안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 15 조 (임기)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.

제 16 조 (업무 및 권한) 학생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.

1. 집행부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2. 본 회의 총회, 학과운영위원회 및 집행부의 회의 소집과 이의 주관
3. 본 회 전체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·결산의 집행 및 학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총회에 제출하는 사항
4. 기타 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

## 제 4 장 학과운영위원회

제 17 조 (지위) 학과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심의기구이다.

제 18 조 (구성) 학과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, 각 학년별 대표 1인, 본 회 집행부 기획부장으로 구성한다. 단, 학과운영위원회가 필요시 해당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.

제 19 조 (업무 및 권한) 학과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.

1. 학생회비의 책정권
2. 학생총회의 소집요구권
3. 학생회의 제반사업과 예산·결산보고서의 검토, 조정, 심의 및 홈페이지 공고
4. 집행부의 업무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, 조정, 심의
5. 회칙 개정안의 발의
6. 기타 제반 사항의 의결

제 20 조 (소집) 학과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1.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학과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2. 임시회의는 학생회장의 요구나 학과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이를 소집한다.

제 21 조 (의결) 학과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1/20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1/20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 5 장 집행부

제 22 조 (지위) 집행부는 본 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.

제 23 조 (업무 및 권한, 조직)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.

1. 학과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의 집행
2. 학생회에 관한 일체의 사업계획보고서와 결산보고서의 학과운영위원회에 제출
3. 집행부는 각 부로 조직하고 각 부는 부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며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.
  - 가. 기획부 : 제반사업의 기획
  - 나. 총무부 : 사무, 회계에 관한 업무
  - 다. 학술부 : 학술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
  - 라. 문화부 : 문화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
  - 마. 섭외부 :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제반 업무

## 제 6 장 재 정

제 24 조 (재정) ①본 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.

②본 회의 회비는 본 회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 25 조 (회계년도)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, 예산은 1학기와 2학기  
기로 나누어 집행과 결산을 행한다.

- 제 26 조 (예산) ①학생회장은 총수입 및 지출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 학기시작 1개월 이내에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.
- ②예산은 사업계획에 의하여 항목별로 편성하고 학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③학과운영위원회는 동 예산안을 심의 조정하여 학생총회 및 학생지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학과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6일 이내에 심의, 확정하고 확정후 3일 이내에 학생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학생회장은 학과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⑥예산 확정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적인 수입이나 지출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동 추경예산안은 학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⑦학생회비의 징수 및 관리는 학생지도위원회 승인 및 학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인출 및 집행은 학생회장이 인출 집행한다.
- 제 27 조 (가예산) 본 회의 예산이 소정 기일내에 확정되지 못하여 본 회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때에는 학생회장은 학생지도위원회 및 학과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.
- 제 28 조 (결산보고) ①학생회장은 매 학기말을 기준으로 집행부가 작성한 해당 결산보고서를 수합하여 학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지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학생회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 후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제 29 조 (감사) 본 회의 사무 및 회계에 대하여는 학과운영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한다.

## 제 7 장 선 거

- 제 30 조 (선거시기) 학생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의 11월중에 실시한다.
- 제 31 조 (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) 본 회의 선거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.
- 제 32 조 (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선거)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입후보자는 2인 1조가 되어 선거의 전 과정에 1개조로서 참여하고, 본 회 전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단, 단일후보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- 제 33 조 (선거방법) 선거는 보통, 직접, 비밀, 평등선거로 하되, 당해 회원 1/2 이상 참가시 유효하다.
- 제 34 조 (자격)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입후보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본 대학교에서 4학기 이상 수료하고,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
  2. 전체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2.00이상인 자
  3. 본 회 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
  4. 유급 및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
  5. 본 회 집행부는 그 직을 사퇴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자
- 제 35 조 (보궐선거) 학생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잔임기간이 150일 이상일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.
- 제 36 조 (선거시행세칙)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
## 제 8 장 학생지도위원회

- 제 39 조 (구성) ①본 회의 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.
- ②본 회 학생지도위원회의 구성은 학과장 및 학과 전임교수로 구성한다.

제 40 조 (기능) 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학생회활동에 따른 제반 사항을 지도 감독한다.

1.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2. 조직에 관한 사항
3. 회비책정에 관한 사항
4. 예산·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
5. 학생자치활동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
6. 학생 안전에 관한 사항
7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8. 단, 위 1, 3, 4, 6호의 경우 사전에 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.

## 제 9 장 보 칙

제 41 조 (기타) ①회칙에 나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각각의 시행세칙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.  
②본 회 회칙은 상명대학교 학과 공식홈페이지에 상시 공고한다.

## 부 칙

이 회칙은 2023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